

국제사회보장협회 비전 제로 워크숍 참가 국외출장 계획

I 목 적

- 국제사회보장협회(ISSA)가 산업안전보건 증진과 예방문화 조성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전 제로(Vision Zero) 캠페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워크숍 참여
 - ISSA 예방문화위원회 의장기관 자격으로 참여, 국내 전파방안 검토
 - 비전 제로 철학, 세부 실행항목(7 Golden Rules) 등의 개념 논의
 - 예방문화 확산을 위한 비전 제로 전파를 위한 강의기법 등 공유
- ※ 국제사회보장협회 재해예방특별위원회, 건설위원회, 광산위원회 공동 개최

비전 제로(Vision Zero)

국제사회보장협회가 노동자의 안전, 보건 및 웰빙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 캠페인

☞ 모든 사고와 질병은 운/운명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원인이 항상 존재함으로

☞ 효과적인 예방문화 구축으로 모든 사고와 질병은 예방과 제거가 가능함

※ 2017. 9월, 싱가포르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시 국제적인 캠페인 개시

II 출장 개요

- 출장기간 : '19. 1. 8(화) ~ 1. 13(일) [4박 6일]
- 출 장 지 : 독일 베를린
 - 독일 산재보험조합(DGUV) 베를린 본부
- 출 장 자
 - 국제협력센터 전문직 2급 이 재 왕
 - 교 육 원 연구교수직 3급 변 중 한

III 주요 수행사항

- VISION ZERO의 철학, 개념 보완 및 효과적인 전파 방안 논의
- 국가별/지역별로 확산 노력 및 실행 계획 협의
 - 국내 및 아시아 지역에서 캠페인 전개 방안
- 비전 제로 확산을 위한 강의기법 개발 워크숍 참가
 - 참가자간 소그룹 활동과 발표를 통해 강의역량 강화
 - 세부 실행항목(7 Golden Rules) 별 실행방법 논의
- ISSA 건설위원회 및 광산위원회와 재해예방 활동 및 협업 논의
 - 2019년 예방문화위원회와 기타 위원회와의 협력 방안

IV 세부 일정

일 시	수 행 사 항	기 타
'19. 1. 8(화)	○ 인천 -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- 독일 베를린	
1. 9(수)	○ 건설위원회, 광산위원회 협업 회의 ○ 워크숍 사전 준비회의 - 소그룹별 워크숍 준비	독일 재해보험조합 베를린 본부
1. 10(목)	○ 비전 제로 워크숍 (1일차) - ISSA 및 참가국가의 비전제로 추진현황 보고 - 비전제로 교육훈련 자료 설명 - 소그룹별 토의 및 발표	
1. 11(금)	○ 비전 제로 워크숍 (2일차) - 산업계의 경험·활동 공유 - 비전제로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- 향후 계획 및 협력 방안 - 워크숍 결과 평가 및 발전방안 도출	
1. 12(토) ~ 13(일)	○ 독일 베를린 -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- 인천	

VI 행정 사항

- 동 출장은 '19년도 국제협력센터 사업계획 중 “글로벌 산업안전보건 예방문화 확산—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안전보건 정보공유” 사업으로 실시
- 여비규칙 제23조(여비의 조정)에 따라 동행한 상급자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급 적용
- 울산-인천공항 간 국내 이동 운임은 소속기관 국내여비로 지급
- 국외유관기관 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「공직자 선물신고제도」에 따라 처리 ※ 선물신고 안내문 : 【덧붙임1】
- 출장자는 출발 전 ‘ERP/공통/국외출장 신청 및 조회’에 출장정보 입력, 복귀 후 마일리지 적립내용 신고 철저

【덧붙임1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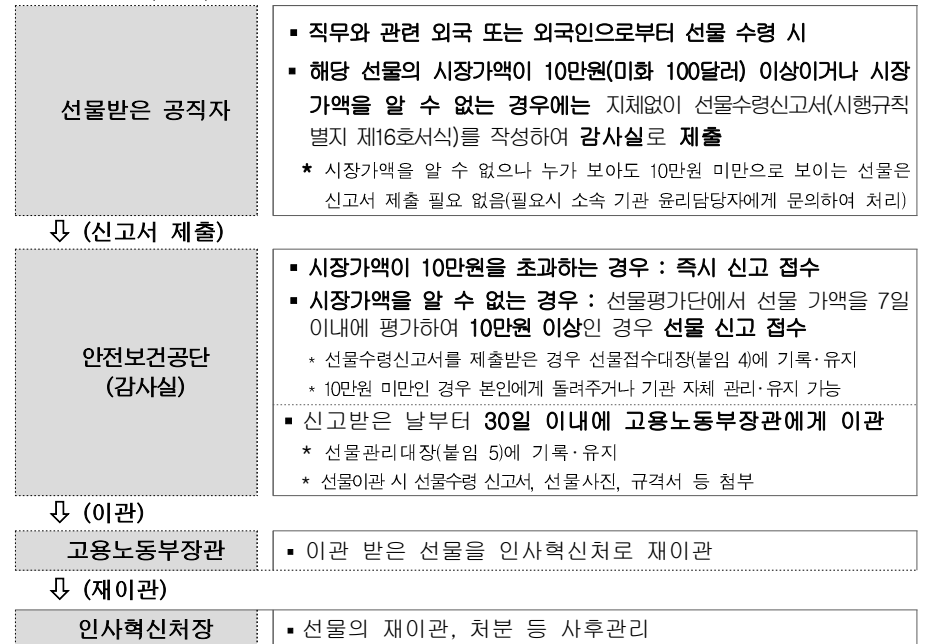
선물신고 안내문

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·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제도개요

- 근 거 : 공직자윤리법 제15조~제16조, 동법시행령 제28조~제30조
- 신고의무자 :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(가족포함)
- 대상 선물 :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(단체포함)으로부터 받은 선물

□ 신고요령(절차)



□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

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